

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4쪽 중 제1쪽)

1. 기본사항

사업연도(과세기간): 2020년 01월 01 일 ~ 2020년 12 월 31일 [V] 정기공시 [] 해산공시			
① 공익법인등 명	(사)한국국제경제법학회	②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209-82-08226
③ 대표자	이재민	④ 설립연월일	2013년 06월 18일
⑤ 소재지	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,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	⑥ 전화번호/팩스	010-6514-6363
⑦ 홈페이지 주소	www.ksiel.or.kr	⑧ 전자우편주소	ksiel@daum.net
⑨ 주무관청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	⑩ 기부금(단체) 유형	[]법정 [V]지정 []기타
⑪ 설립근거법	「민법」제32조와 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		
⑫ 설립유형	[]재단법인 [V]사단법인 []법인으로 보는 단체 []공공기관 []기타		
⑬ 공익사업유형	학술		
⑭ 설립주체	[V]개인 []기업 []개인·기업 []국가 []지방자치단체 []기타		
⑮ 이사 수	5명 (법인등기부)	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	20명
⑰ 고용직원 수	1명		

2. 자산 및 부채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⑮자산소계	⑮토지	⑮건물	⑮주식 및 출자지분	⑮금융자산	⑮기타자산	⑮부채
① 총계 (a=b+c)	201,219,203				201,219,203		974,600
② 공익목적사업	199,094,193				199,094,193		749,100
③ 기타사업	2,125,010				2,125,010		225,500

3. 수익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⑮총계	⑮사업수익					⑮사업외수 익
		⑮소계	⑮기부금	⑮보조금	⑮회비수익	⑮기타	
① 총계 (a=b+c)	76,903,481	76,903,481	4,000,000		5,700,000	67,203,481	
② 공익목적사업	9,700,000	9,700,000	4,000,000		5,700,000		
③ 기타사업	67,203,481	67,203,481				67,203,481	

4. 비용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⑮총계	⑮사업비용					⑮사업외 비용 등 기타
		⑮소계	⑮사업 수행비용	⑮일반 관리비용	⑮모금 비용	⑮기타	
① 총계 (a=b+c)	88,307,641	88,307,641	18,514,673			69,792,968	
② 공익목적사업	18,514,673	18,514,673	18,514,673				
③ 기타사업	69,792,968	69,792,968				69,792,968	

5. 확인란

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,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
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대표자 : 이 재 민

확인일자 : 2021. 04. 25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
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
2021년 04월 25일

법인명 (사)한국국제경제법학회

작성방법

*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, 제61조,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)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(종교법인)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*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.

1. 기본사항

- 가. 해산(등기)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"해산공시"에, 그 외의 경우 "정기공시"에 √표를 합니다.
- 나. "㉑주무관청"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,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,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. (예: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(교육청),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(서울특별시),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)
- 다. "㉒기부금(단체) 유형"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"법정"에,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4항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"지정"에, 그 밖의 경우 "기타"에 √표를 합니다.
- 라. "㉓설립근거법"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.

1. 민법, 2.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, 3. 사회복지사업법, 4. 사립학교법, 5. 의료법, 6. 협동조합기본법, 7. 기타 법률, 8. 해당없음

마. "㉔설립유형"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√표를 합니다.

- 「민법」이나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√표를 합니다.
-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'법인으로 보는 단체'는 '법인으로 보는 단체'에 √표를 합니다.
-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√표를 합니다.
-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√표를 합니다.

바. "㉕공익사업유형"란은 1. 교육, 2. 학술·장학, 3. 사회복지, 4. 의료, 5. 예술·문화, 6.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사. "㉖설립주체"란은 설립주체(기본재산 출연자)에 √표를 합니다.

※ 설립주체

- (개인)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, (기업) 기업이 설립한 단체, (개인·기업)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
- (국가) 국가(정부)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, (지방자치단체)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
- (기타)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
-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과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'개인'을,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'기업'을 선택합니다.

아. "㉗이사 수"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(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)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(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).

자. "㉘자원봉사 수"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.

(예.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, 1*365=365명)

차. "㉙고용직원 수"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(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, 일용직은 제외)를 적습니다.

※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: (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/ 사업연도 월수)

2. 자산 및 부채현황

가. "㉚자산소계~㉜부채"란은 사업연도(과세기간) 종료일 현재 「공익법인 회계기준」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※ "공익목적사업"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(예 : 문화·예술 전시사업,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으로 수익 등은 「법인세법」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에 구분합니다).

※ "기타사업"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.

※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

-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에 구분하며,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도 기념품 판매, 카페 운영,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에 구분합니다.

작성방법

- 나. "㉑주식및출자지분"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(보통주, 우선주 포함)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.
- 다. "㉒금융자산"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(보통예금, 당좌예금,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)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에금, 정기적금, 펀드상품,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, 회사채등 유가증권(㉒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)의 재무상태표(대차대조표)상 가액을 적습니다. 정기에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는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.
- 라. "㉓기타 자산"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, 미수이자, 미수임대료, 선급금 등 ㉒부터 ㉔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.

3. 수익현황

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(손익계산서)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- 가. "㉔기부금"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.(예: 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)
- 나. "㉕보조금"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.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(예 : 장애인 고용장려금,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)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.
- ※ 보조사업자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(보조사업)을 수행하는 자
- 다. "㉖회비수익"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.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(재화·용역 제공)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.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,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,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"㉔기부금"란에 적습니다.
- 라. "㉗기타"란은 기부금, 보조금,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.
- 라. "㉘사업외수익"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(손익계산서)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·무형 자산처분이익, 유형·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,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4. 비용현황

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- 가. "㉙사업수행비용"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, 고객,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(6쪽 "11.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"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)을 적습니다.
- 나. "㉚일반관리비용"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, 인사, 재무,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(6쪽 "11.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"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)을 적습니다.
- 다. "㉛모금비용"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, 모금 행사, 기부자 리스트 관리,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.

6.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

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

(1) 연구의 수행 및 발표, (2) 학회지의 발간 (3) 국내외 관련 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(4)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자문 (5)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사업내용(중복체크 가능)

[] 문화예술(코드1100)	[] 스포츠(코드1200)	[]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(코드1300)
[] 초등 및 중등 교육(코드2100)	[] 고등교육(코드2200)	[] 기타교육(코드2300)
[V] 학술연구(코드2400)	[] 장학(코드2500)	[] 영유아보육(코드2600)
[] 병원 및 재활시설(코드3100)	[] 요양원(코드3200)	[]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(코드3300)
[] 기타 보건서비스(코드3400)	[] 사회복지(코드4100)	[] 긴급상황 및 구호(코드4200)
[] 소득 지원 및 보존(코드4300)	[] 환경(코드5100)	[] 동물(코드5200)
[] 경제,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(코드6100)	[] 주거(코드6200)	[] 고용 및 훈련(코드6300)
[] 시민 및 옹호단체(코드7100)	[] 법률 및 법률서비스(코드7200)	[] 정치단체(코드7300)
[] 배분(지원) 재단(코드8100)	[] 봉사증진(코드8200)	[] 모금활동(코드8300)
[] 국제활동(코드9100)	[]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(코드10100)	[] 비지니스연합(코드11100)
[] 전문가연합(코드11200)	[] 노동조합(코드11300)	[] 기타(코드12100)

③ 사업대상

[] 모두 해당, [] 아동, [] 청소년, [] 노인, [] 장애인, [] 외국인(다문화), [] 가족 · 여성, [V] 일반대중, [] 기타

④ 국내 주요 사업 지역

[V] 전국, [] 서울, [] 부산, [] 인천, [] 대전, [] 광주, [] 대구, [] 울산, [] 강원, [] 경기, [] 경남, [] 경북, [] 충남, [] 충북, [] 전남, [] 전북, [] 세종, [] 제주, [] 해당 없음

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

[V] 전세계, [] 유럽, [] 아시아, [] 북아메리카, [] 아프리카, [] 오세아니아, [] 남아메리카, [] 해당 없음

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

1	코드	2400	사업명	학술지 인쇄비	사업수행비용	3,858,473 원
사업내용	학술연구				사업지역	국내
2	코드	2400	사업명	학술지 심사비	사업수행비용	3,090,000 원
사업내용	학술연구				사업지역	국내
3	코드	2400	사업명	학술대회 인건비	사업수행비용	10,834,821 원
사업내용	학술연구				사업지역	국내
4	그 외 사업			1개	사업수행비용	731,374 원
합 계	총 공익목적사업			4개	사업수행비용 합계	18,514,673 원

작성방법

6.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

가. "①공익목적사업 현황"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,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.

나. "②사업내용"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√표를 합니다.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"배분(지원) 재단(코드8100)"에 √표를 하고,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"모금활동(코드8300)"에 √표를 합니다.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(예 :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, "배분(지원) 재단"과 "사회복지" 모두 √표를 합니다).

다. ③부터 ⑤까지 []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, 국내주요사업지역,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√표를 합니다.

라.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(사업명, 사업수행비용, 사업내용, 사업지역)을 적습니다. 코드는 "②사업내용"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, 나머지는 '그 외 사업'에 합산하여 적습니다.

마.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"5. 비용현황"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